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50% 감면(5년간) ○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·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5% 감면(75만원 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%,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 ○ (일몰기한) 2028.12.31.

□ 개정내용

-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50% 감면*(5년간)
 - * 빈집이 철거된 토지,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
 - ※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
 - 다만, 철거 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「국토계획법」, 「도시 개발법」 등에 근거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 감면 제외
- 빈집 철거 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유주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철거 3년 내에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원시 취득세 25%(+조례 25%) 감면
 - ※ 감면 한도 75만원(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75만원 추가 가능)

□ 적용요령

- 2026. 1. 1.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